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서

(CITES perm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OR FLORA

☐ 수출 EXPORT ☐ 재수출 RE-EXPORT ☐ 수입 IMPORT ☐ 기 타 OTHER		1. 허가번호 Original Permit/Certificate No. R.O.K		
		2. 유효기간 Valid until		
3. 실수요자 : 성명·주소·국명 Consignee : Name and address, country		4. 신청인 : 성명·주소·국명 Permittee : Name and address, country		
3a. 목적지 Country of destination				
5. 특별사항 Special conditions VALID FOR MULTIPLE SHIPMENTS. PERMITTEE TO RETAIN ORIGINAL For live animals this permit or certificate is only valid if the transport conditions conform to the guidelines for transport of live animals or plants, in the case of air transport,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		6. 성명·주소·국가날인·관리당국 Name, address, national seal/stamp and country of management authority		
5a. 거래목적(뒷면참조) Purpose of the transaction(see reverse)				
7\ 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9. 표본기재 (산동물의 경우 : 성별·연령) 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 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 and sex if alive)	10. 부속서 번호 및 출처 (뒷면참조)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11. 표본수량(단위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11a. 총수출 쿼타량 Total exported Quota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허가번호 Permit No.	일자 Date
		12a. 최종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허가번호 Certificate No.	일자 Date

7\ 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9. 표본기재 식별표지 및 번호 포함 (산동물의 경우 : 성별·연령) 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 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 and sex if live)	10. 부속서 번호 및 출력 (뒷면참조)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11. 표본수량(단위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11a. 총수출 쿼타량 Total export Quota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허가번호 Permit No.	일자 Data
		12a. 최종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허가번호 Certificate No.	일자 Data
7\ 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9. 표본기재 식별표지 및 번호 포함 (산동물의 경우 : 성별·연령) 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 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 and sex if live)	10. 부속서 번호 및 출력 (뒷면참조)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11. 표본수량(단위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11a. 총수출 쿼타량 Total export Quota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허가번호 Permit No.	일자 Data
		12a. 최종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허가번호 Certificate No.	일자 Data
★ 동·식물이 야생에서 포획·채취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재수출의 경우) 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 ★★ 상업목적으로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부속서 I 의 동·식물에 한합니다. Only for specimens of Appendix I species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 ★★★ 협약 이전의 표본 For pre-Convention specimens				
13. 허가서 발급기관 This Permit/certificate is issued by :				
장소 Place		일자 Date	날인 및 서명 Security stamp, signature and official seal	
14. EXPORT ENDORSEMENT :		15.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oading/Airway-Bill Number		
See block 7	Quantity			
A				
B				
C				
		수출항 port of exportation	일자 Data	서명 Signature
				날인 Official seal and titl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뒤 쪽)

※ 작성요령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사각형에 표시(수출 허가서, 재수출 증명서, 수입 허가서 및 기타), 기타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명시할 것, 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2. 수출 허가서와 재수출 증명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이 문서 발행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수입허가서는 1년).
3. 실수요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 3a. 국가명은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4. 신청인의 성명·주소·국가명 기입,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허가서는 무효입니다.
5. 특별사항에는 국가법률이나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선적관련 특별조항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특정정보 생략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a. 사용되는 코드 :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법의학용
6.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이름·주소·국가로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 7./8. 협약 부속서나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참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식물의 학명(속명·종명·아종명)과 허가서 발급국가의 동·식물 통속명 기입합니다.
9. 거래되는 표본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산동물, 가죽, flanks, 지갑, 신발 등), 만약 표본에 표지가 되어 있다면(태그, 식별표지, 가락지 등) 그것이 당사국 회의 결정서에 의해 요구되는 표본(목장사업을 위한 표본, 당사국 총회에서 허가된 할당량에 필요한 표본, 상업목적에 위해 포획사육된 부속서 I 에 기재된 종의 표본)이던 아니던 표지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 산동물의 경우 가능하면 성별과 연령을 기입합니다.
10. 해당종이 들어있는 협약부속서 번호(I, II 또는 III)를 기입합니다.
 -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
 - W 야생의 표본
 - R 목장의 표본
 - D 상업목적으로 포획사육된 부속서 I 기재표본으로서 CITES 규정 제7조제4항에 의거 수출한 표본(부분품, 완제품 포함)
 - A 식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제5항 및 제11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1. 11)에 따라 인공재배한 표본(상업 목적으로 인공재배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표본, 부분품, 완제품 포함)
 - C 동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5항 및 제10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0. 16)에 따라 인공사육한 표본(상업 목적으로 인공사육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표본, 부분품, 완제품 포함)
 - F 인공사육환경에서 출생한 동물(제2세대 또는 그 자손)로서 제10차 당사국 회의 결정서(Conf. 10. 16)에서 정의한 "포획사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
 - U 출처미상 표본(정당한 사유 설명)
 - I 몰수 또는 압류된 표본
 - O 사전 협약된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가능)
11. 수량과 단위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의 최신판을 따라 기입합니다.
- 11a. 허가서의 표본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연도의 할당량을 기입(예. 500/1000)하되, 이것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당 할당량과 맞아야 합니다.
12. 동·식물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 수출국의 허가번호와 허가서 발급일을 기입하고,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입하고, 이 난은 재수출의 경우 기입하여야 합니다.
- 12a. 이 문서를 발급하는 국가에 표본을 재수출한 최종 재수출국,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허가서 번호와 그 허가서 발급일을 기입,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입하되, 이 난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이 재수출될 경우 기입해야 합니다.
13. 허가서 발급 기관이 기입, 기관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입하되, 이 난에는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고, 취소는 허가서 발급기관의 서명에 의하여야 하며, 날인·서명·날인번호는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시 선적 조사 기관이 기입하고,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수량을 기입하며, 사용하지 않는 난은 삭제합니다.
15. 운송수단에 따라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를 기입합니다.
 - 이 문서는 협약에서 통용되는 세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불어)중 하나로 쓰여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세 언어중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표본을 같은 문서 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표본으로 나타내서는 아니됩니다.
 - 이 문서를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관리당국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